

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,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그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 10 조 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11 조 (의견 청취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12 조 (심의안건 제출)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.

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수당, 여비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4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
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산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서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 금지급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, 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급대상 및 방법)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조 (지급의 한도)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,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한다.

제 4 조 (지급의 제한)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 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